

시카고 근로 기준

ANTI-RETALIATION ORDINANCE(보복 방지 조례)로 모든 근로자 보호



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복 방지

근로자를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복으로부터 보호

Vaccine Anti-Retaliation Ordinance(백신 보복 방지 조례)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고용주가 백신 접종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, 근무 시간 중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백신 보복 방지 조례는 다음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.

번호	보호 조치
1	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 외 시간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으며,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 없다.
2	근로자는 누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하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, 고용주는 이러한 목적으로 누적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.
3	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고용주는 백신 접종 예약이 직원의 근무 시간 중에 있는 경우, 직원이 백신 접종에 소요한 시간(접종 회차당 최대 4시간)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.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백신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에 유급 병가나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.
4	고용주는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백신 접종을 하는 데 대해 보복할 수 없다.



항의 제출

311번으로 전화하거나 CHI 311 앱을 사용하세요. 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항의 양식을 제출하세요.

www.chicago.gov/laborstandards

자세한 정보는 Office of Labor Standards(근로기준국)에 bacplaborstandards@cityofchicago.org로

이메일을 보내거나 312-744-2211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.